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28
----------	-------

발의연월일 : 2026. 8. 4.

발 의 자 : 정춘생 · 허성무 · 차규근
이수진 · 이주희 · 서왕진
문대림 · 김준형 · 신장식
이해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으로 규정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직업소개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현행법에 따라 수수료율의 규제를 받는 사업들에 비해서 수수료율이 현저하게 높고 수수료 금액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5호).

법률 제 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수수료 등을 받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정의)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 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 소개사업을 말한다. <후단 신 설>	5. ----- ----- ------. <u>이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수수 료 등을 받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u>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